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87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전무곤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3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피고인의 직책이나 조직의 인상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하였다고 증명된 행동과 당시의 인식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위법한 체포나 수사에 관여하려 했는지는 엄정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법률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위법한 명령을 실행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전무곤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의식적으로 수행했다는 판단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공모하여 소속 검사들에게 관할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측은 상급자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툼을 충분한 증거로 밝혀 주시고, 각 혐의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먼저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관련 문서를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2026년 10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심 전 총장에게서 포고령 위반자 수사·재판 관할 검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라는 문제를 먼저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스스로 어떤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따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인의 독자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고, 반대로 부서에서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작성 경위가 모두 피고인의 범죄적 지시로 설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화·메신저·회의 기록, 최초 과제 제안자와 전달자, 검토 범위를 정한 사람, 작성자와 최종 보고 상대방을 연결하여 보아 주십시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그 지시의 목적과 형사책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건의 이름보다 내용, 작성 과정, 실제 쓰임을 살펴주십시오.

검찰청에는 법령 적용, 수사기관의 권한, 관할과 절차의 충돌을 검토할 일상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이 법률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포고령 위반자를 위법하게 수사·구금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만들었다면 그 성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문건이 단순한 법률상 문제점 확인이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담 수사체계·군사재판 관할·검사 파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지침이었는지 원문을 통해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첫 작성자와 작성 시각, 초안과 수정본의 차이, 피고인의 수정 또는 보고 지시, 문건의 전달 대상, 실제 활용되었거나 활용을 준비한 흔적을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건의 실제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준비·지원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맡았다는 임무의 내용과 중요성, 불법적 목적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때 문건의 객관적인 내용과 후속 경과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차례로 확인한 뒤에야 피고인의 행동이 내란 실행을 위한 관여였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모의 존재와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식은 개별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소속 검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위와 보고 관계는 공모를 판단하기 위한 주변 사정이지 그 자체로 범죄적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체계의 구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와 지시를 했다면 지위에 관계없이 그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고령과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검토 결과가 위법한 체포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는지,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했는지 개별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우정 전 총장과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했는지, 작성된 문서가 그러한 의사 연락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형법 제87조 제2호의 중요한 임무에 의식적으로 종사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에 관한 지식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행위의 범죄적 성격과 내란의 목적에 관한 인식을 어떤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끝까지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직권남용 혐의는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 따져 주십시오.

전무곤 피고인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도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가집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한 사실뿐 아니라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에 대한 심리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지시권을 가졌다는 사정이나 지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에 참여한 개별 검사들의 지위와 통상적인 직무 범위, 실제로 수행한 업무, 이를 명령한 사람과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업무가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었는지, 혹은 법령상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인지가 증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 관련 항소심에서도 위법한 목적을 가진 지시가 있었다는 평가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이 판단은 전무곤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옮길 수 없지만, 직권남용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관련 별도 혐의가 전무곤 피고인의 행위와 섞여 평가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5. 관련 항소심의 유리한 부분도 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주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에서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하라는 원론적인 검토 지시만으로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인력 파견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는 다른 행위에 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단을 전무곤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례처럼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파견에 대비하는 지시와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재판 관할을 정리한 문건의 작성은 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판결은 '검토'라는 표현과 실제 실행 지원 사이의 거리를 객관적인 내용과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판부께서 이번 사건에서도 상급자 지시의 존재와 그 내용부터 판단하시고, 문서가 위법한 수사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의식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본건의 증거로 심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건의 유무죄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전무곤 피고인 자신에 대한 증명의 충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어 – 독립된 판단과 무죄의 원칙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저는 피고인을 직접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전체 수사기록을 확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일수록 한 사람의 책임을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작성된 문서가 무엇에 쓰였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을 인식했는지는 하나의 결론으로 서둘러 묶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부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심리해 주시고, 전무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세심한 심리를 이어가시는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